

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2. 3. 22.(화)

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(안 제2조)

나.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2. 3. 11. ~ 3. 17.(7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2 (노인체육의 진흥)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안 제9조에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, 건전한 체육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노인체육에 대한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9조(경비의 지원)

-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
  2.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
  3.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
  4.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남양주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」 일부개정안은 노인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필요 시책 마련 및 지원근거 규정을 목적으로 함  
다만,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향후 사업계획수립이 마련되어야 추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사업계획 미수립 단계로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### 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체육과장 곽 용 환

**☑ 「국민체육진흥법」**
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**(현행 조례)****☑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**

( 제정) 2019.04.11 조례 제1629호

(일부개정) 2021.07.01 조례 제185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,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체육”이란 운동경기,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전문체육”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.
3. “생활체육”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.
4. <삭제 2021. 7. 1.>
5. “체육단체”란 체육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6. “체육동호인조직”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전문체육의 진흥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문체육의 진흥을
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
2.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3.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
4.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
5.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
6.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7.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남양주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
3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
4.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5.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
6.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·지원
7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
8.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
9.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8조(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
2.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
3. 사무시설 임차료
4.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

② 제1항제1호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,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

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7. 1.]

[제목개정 2021. 7. 1.]

제9조(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)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, 체육동호인조직 등(이하 “체육단체 등”이라 한다)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경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,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③ 체육단체 등이 사정의 변경으로 해당 보조사업을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7. 1.]

[제목개정 2021. 7. 1.]

제10조(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사용) ①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
2.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곤란한 경우

② 시장은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1.]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·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1. 7. 1.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위법·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신설 2021. 7. 1.>

[중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<2021. 7. 1.>]

제12조(준용)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1. 7. 1.>

[중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<2021. 7. 1.>]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 <2021. 7. 1.>]

부칙 <조례 제1629호, 2019. 4. 11.>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859호, 2021. 7. 1.>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